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89

제출년월일 : 2002. 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▢ 제안이유

○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· 징수에 관한 사무가 사실조사 및 고지서 발급 등 그 사무의 성격상 구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동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그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.

▢ 주요골자

○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· 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(안 별표).

▢ 개정조례안 : 별 첨

▢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별 첨

▢ 관계법령발췌서 : 별 첨

○ 지방자치법 제95조

▢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▢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▢ 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
▢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별표 "위임사무"중 구분란 '교통행정과'안에 "4.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· 징수에 관한 사항"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교통행정과	4.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	1.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· 징수 등	·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· 동 법시행령 제25조 · 동 법시행령 제28조	구청장
		2.교통유발부담금 의 경감	·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 · 동 법시행령 제24조	
		3.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등	·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· 동 법시행령 제26조	
		4.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부과징수 및 독촉 등	·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· 동 법시행령 제27조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 · 과		총 무 과
입안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총무과장 이 범 구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인사담당 이 장 원
	담 당 자 성명 · 전화	송 순 복 (행정 3108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

〈별표〉

위임사무(제2조 관련)

구 분	위임 사무명	단위 사무명	근거법령	수임 기관
교통 행정과	1.~3.	(생 략)		
	〈신 설〉			

개 정 안

〈별표〉

위임사무(제2조 관련)

구 분	위임 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령	수임 기관
교통 행정과	1.~3.	(현행과같음)		
	4.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	1.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· 징수 등	·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· 동 법시행령 제25조 · 동 법시행령 제28조	구청장
		2.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	·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 · 동 법시행령 제24조	
		3.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등	·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· 동 법시행령 제26조	
		4.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징수 및 독촉 등	·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· 동 법시행령 제27조	